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,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,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국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, “일반직공무원·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”를 “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3급·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용조건·임용절차·임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국립학교 설치령」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별표 2의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란 중 “비상기획,”을 “비상기획,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등”으로, 같은 란 중 “총장”을 “학교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하부조직)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,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<u>일반직공무원·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</u> , 교수부장과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.	제10조(하부조직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사무국장</u> ----- --- <u>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과장 및 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.</u>	④----- <u>3급·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⑤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<u>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용조건·임용절차·임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국립학교 설치령」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</u>

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3 - 6063